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3년 11월 3일

나. 회부일자 : 1993년 11월 3일

3. 제안이유

- 임대주택사업자가 고용자의 신청에 의해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므로, 본조례 제정 목적으로 보아 당연히 과세면제하여야 하나
-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이를 과세면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예상되어 현행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내용을 보완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동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중 "양도하거나"를 "양도(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대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로 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현행 조례 제3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사업자가 고용자의 신청에 의해 사원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
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면세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
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과세면제를 지원하여 주택사업
을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 부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